

수원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가단57182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민

담당변호사 배은서

피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학

변론 종결2022. 5. 12.

판결 선고2022. 6. 16.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8. 2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20. 8. 24. 접수 제9227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9. 11. 20. 보증원금을 27,000,000원, 신용보증기한을 2023. 11. 2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채권보전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D은행에서 27,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다. B은 2019. 11. 20. 소외 회사를 대표하여 원고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지 않는 대신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책임경영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책임경영의무 등) 약정인은 제1조의 보증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을 서지 않는 대신 아래에서 정하는 책임경영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니다.

(중략)

6. 제6조에서 정하는 부수의무의 준수

7. 기타 책임경영에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 금지

제4조(책임경영의무위반과 약정인의 책임) 약정인은 제2조에서 정하는 책임경영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제1조의 보증약정으로 발생한 보증금액의 잔액을 회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재단에서 제2조 책임경영의무 위반 사실과 회수금액 및 기한을 통지하여 약정인에게 도달하면 약정인은 즉시 회수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책임경영의무위반이 아닌 것으로 재단에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2. 제1호의 책임경영의무 위반사실 통지와 관련하여 약정인이 신고한 주소로 재단이 서면 발송한 경우에는 그것이 연착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도 보통의 우편물 송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기로 합니다.

제6조(부수의무) ① 약정인은 제2조의 책임경영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재단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 즉시 통지하겠으며 관련 자료와 장부 열람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합니다.

② 부가가치세신고내역, 주주현황, 경영진변동, 재무자료 등의 경영현황 관련자료를 재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합니다.

③ 약정인은 제2조 제3호의 자금유용과 관련하여 주식투자, 부동산 투자 등 용도 외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며, 이를 점검하기 위해 재단이 대출기관의 대출금입금전용계좌로 관련 금융정보를 수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라. 소외 회사는 이자 연체로 2020. 11. 16.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21. 3. 11.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D은행에 27,480,555원(= 원금 27,000,000원 + 이자 480,555원)을 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2021. 3. 5.경 B에게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 제6조에 따라 책임경영의무 준수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안내서를 발송하였으나 B은 이를 소명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21. 3. 23. B에게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 위반(이행점검을 위한 서류제출 거부 등 기타 책임경영의무를 위반한 중대 사유 발생)을 이유로 B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금 27,000,000원을 상환할 채무를 부담하게 됨을 통지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소외 회사와 B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489873호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위 사건을 공시송달로 진행한 뒤 2021. 9. 8. '원고에게 소외 회사는 27,069,2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B은 소외 회사와 공동하여 위 돈 중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사. 한편 피고의 부 E은 2019. 2.경 B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B은 2020. 2. 18. E과 피고를 채권자로 하여 차용금을 100,000,000원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는 2020. 8. 24.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0. 8.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9227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은 시가 55,66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달리 적극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으로는 F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53,858,000원, 주식회사 G에 대한 채무 13,193,889원, E에 대한 채무 100,000,000원 등이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하는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을 하면서, 책임경영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원고가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통지하고 관련 자료와 장부 열람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며 경영현황 관련자료를 원고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할 것인데, B은 원고의 책임경영의무 준수여부 소명 요구에 불응함으로써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B은 소외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책임경영이행약정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20. 8. 24.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소외 회사가 그로부터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2020. 11. 16.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미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책임경영이행약정에 기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그 후 실제로 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실제로 위 구상금채권이 성립한 이상,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4978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이와 같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던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에게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B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항변

1) 피고는 E과 피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당시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2) 그러나 위와 같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위 2006다5710 판결 참조),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담보제공행위도 사해행위가 되는 이상, 피고가 실제로 B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곧바로 선의의 수익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이후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선영

별지